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718호
- 발의자 : 전병주 의원 등 14명
- 발의일자 : 2025년 5월 23일
-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II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2024년도 모두 3등급에 그치며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III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감과 공직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IV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2025.6.3.~ 6.7.(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전병주 의원 등 14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718호로 공동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2년간(2023~2024년) 3등급을 그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에 따라¹⁾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하였고, 이후 2021년 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원적 평가 체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제도등을 반영하기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해 청렴도와 부패실태를 통합하는 등 평가 체계를 전면개선하여 2022년부터 지금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²⁾.

-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을 비롯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총 721 개의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고³⁾,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⁴⁾

[표-1]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대상 기관 및 유형

합계 (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 育 청	공직유관단체					국공 립대 학	지방의회			
			기초		I (공기업)	II (준정부)		III (중점)	IV (지방 공사공단)	V (연구원)	기초			기초			
	I (장관급)	II (차관급)	광역	I (시)	II (군)	III (구)		광역	I (시)	II (군)	III (구)	기초					
721	25	23	17	75	82	69	17	31	57	24	19	23	16	17	75	82	69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 이러한 청렴도 평가제도의 시행 및 변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도 매년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반부패청렴정책추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⁵⁾

2)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4, 제1~2쪽.

3) 「부패방지권익위원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4)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 종합 점수는 2022년 83.2점, 2023년 80.5점, 2024년 82.6점으로 총 1~5등급의 구간 중 매년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2]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연도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노력도		종합청렴도	
			부패실태	신뢰도 저해행위	점수	등급
2022년	80.9 (3등급)	87.7 (4등급)	-0.4	0.0	83.2	3등급
2023년	80.7 (3등급)	88.1 (3등급)	-2.2	-1.1	80.5	3등급
2024년	79.6 (3등급)	87.0 (4등급)	0.0	0.0	82.6	3등급

*출처: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개선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부진한 종합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칙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사업(안 제6조), 청렴도 평가(안 제7조), 부패행위 신고(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및 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알기 쉬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102페이지.

운 법령 정비기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의(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서, 안 제1호에서는 ‘각급 기관’의 범위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안 제1호가목)과, 교육감이 설치한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안 제1호나목)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2호는 ‘공직자등’을 앞서 정의한 각급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3호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부패방지권익위원회」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각급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과 관련한 관련 법(「부패방지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6)에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공직자」의 범위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물론 동 조례안이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자체적인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과 동일하게 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낮아 청렴도 향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

또한 관계법령에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을 명시하고 있고,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를 해당 법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2조제3호)하고 있으며, 해당 법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법적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서울시 사립학교 수(829개교)는 전체 학교(2,127개교) 수의 39%, 사립학교 교직원 수(25,786명)는 전체 학교 교직원수(86,579명)의 30%에 달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조례안의 「각급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도 사립학교 및

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생략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학교 법인, 그 기관의 장과 교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공직자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공무원 외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용된 교육공무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직원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하며⁷⁾, 이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제2조제3호)의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것인바,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법의 직접적 적용을 받는 규정이 아니며,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에 소속 전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도 더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적용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서 그 범위를 자치단체 설정에 맞게 넓게 설정 할 수 있다는 해석 또한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 강화와 공공성 확대라는 해당 법의 입법 취지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 나.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 다. "단시간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에도 부합하며, 입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규정으로 사료됩니다⁸⁾.

3)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제1항 및 제2항),

공직자등에게 법령 준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부패 및 품위손상 행위 금지 등 직무윤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항).

○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교육감의 조직 내 청렴성 확보 및 부패방지 시책 수립에 대한 책무를 명문화한 것으로,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안 제3항은 공직자등에게 직무윤리 기준(법령준수, 청렴한 직무수행)을 준수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제1항 각 호⁹⁾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

8)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45쪽.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례에서 법령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9)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의 기본목표 및 방향

며(안 제1항),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의 주요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 전략과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청렴 추진 점검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¹⁰⁾.

[표] 연도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중점(세부) 추진 과제(2022~20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점 추진내용	-청렴 생태계 조성 -청렴 제도 구축·운영 -청렴 취약분야 집중 관리 -소통하는 청렴 문화	-청렴 생태계 조성 -청렴 제도 구축·운영 -청렴 취약분야 집중 관리 -소통하는 청렴 문화	-함께하는 청렴 -실천하는 청렴 -사각지대 없는 청렴 -신뢰받는 서울 청렴	-청렴 추진체계 확립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소통과 협력으로 여는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공익제보, 강력한 보호체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대책(2022~2025년)」

- 따라서 안 제5조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종합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 달성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외부 평가와의 연계성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3.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분석
 4.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대내외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대책(2022~2025년)」

- 다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은 그 목적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1등급을 달성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의 목표 및 방향성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동 대책에서는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동 과제를 추진하는 시기, 주관 및 협조부서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적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평가 등의 사항 등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닌 실제 조직에 맞는 내실 있는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청렴도 평가(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는 교육감이 공직자 및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안 제1항), 공직자 등은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교육감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청렴도 제고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3항)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4항)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는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

시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이 대상 및 기관을 확대하여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이 안 제5조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하게 되면, 자체적인 청렴도 평가를 통한 결과 분석자료가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바,

안 제7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종합계획 및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는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4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청렴도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¹¹⁾의 하나에 해당하

11)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인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그 평가 결과를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¹²⁾.

- 더욱이 동 조례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과 적용범위에 있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닌바,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법률상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인해 비공개 사유가 꼭넓게 적용될 경우, 서울시 교육청 청렴도 평가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청렴도 평가의 공개 대상·범위·방법 등에

-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2)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청렴도 향상이라는 시의적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884, 2025.6.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 (2180-8270) 이현주 (2180-8272)
----------	--------------------	-------	--